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45 발의연월일: 2022. 10. 5.

발 의 자: 우원식·강민정·강준현

김경만 · 김원이 · 김한규

김한정 • 문진석 • 서영석

송재호 · 신현영 · 유정주

윤영덕 • 이동주 • 이수진

이용우 · 이워택 · 이해식

이형석 · 홍정민 의원

(20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부터 계속된 경기불황,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한계기업 및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가운데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는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의 이익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큼.

이에 현재 서울 외 고등법원 소재지 또는 지리적으로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지역(부산, 광주, 세종, 대구,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걸쳐 균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 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수원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대구가정법원란 다음에 대구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부산가정법원란 다음에 부산회생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광주회생법원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회생법원	수원시
세종회생법원	세종특별자치시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광주회생법원	광주광역시

별표 10의 서울고등법원 서울회생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회 생법원란, 대전고등법원 세종회생법원란, 대구고등법원 대구회생법원 란, 부산고등법원 부산회생법원란, 광주고등법원 광주회생법원란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
수	원	수	원	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
				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대	전	세	종	세종특별자치시
대	구	대	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	산	부	산	부산광역시
광	주	광	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세종회생법원란 및 별표 10의 대전고등법원 세종회생법원란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수원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으로 2029년 3월 1일부터 세종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9년 2월 28일 현재 대전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대구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대구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산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부산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 ⑤ 이 법 시행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광주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23년 2월 28일 현재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